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-

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19. 8. 28.

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

1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2. 개정이유

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, 공유센터, 구립체육시설, 문화예술시설 등의 공공시설 이용자가 사용료 등을 해당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할 경우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관내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,
10% 감면 조항 신설

※ 안건별 개정 내용

조례명	개정내용
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	-안 [별표2]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개정 ※ 단,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감면율 높은 하나만 적용하는 규정 신설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(共有) 촉진 조례	-안 제19조제2항 개정
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	-안 [별표2] 구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액 개정
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-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

4. 참고사항 (4개 안건 공통)

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※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」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공유촉진위원회 위촉 위원은 ‘성별을 고려하여’ 위촉하도록 조문 수정

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5.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(共有) 촉진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으로 결제시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는 일괄 보고하고자 함
- 안건별 주요 개정 내용은, 자치회관, 공유시설, 구립체육시설 및 문화예술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10%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부칙으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하였음

-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부분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로페이 조기 안착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
-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제로페이 사용 경험을 통하여 이용자를 확산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 하더라도, 본 규정이 적용되는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공공시설 제로페이 이용자 현황 예측과 기대효과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위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는지, 실적을 늘리기 위한 한시적 방안은 아닌지 등 제로페이 도입 취지에 비추어 사업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
- 개정안에 따르면 연도말까지 감면 혜택을 받아온 제로페이 사용자는 2020년부터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,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
- 아울러, 향후 여러 개의 조례에 공통으로 개정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신속·편의성을 도모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